

# 서울특별시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  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## 1. 제안이유

- 가. '제2서울핀테크랩 운영'은 금융혁신을 이끄는 핀테크 분야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 및 육성하고, 여의도 서울핀테크랩과 연계하여 글로벌 유니콘 배출을 목표로 핀테크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서울의 디지털금융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,
- 나. 제2서울핀테크랩의 효율적인 운영·관리 및 효과적인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에 특화된 인큐베이팅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 본 사무를 위탁하고자 함
- 다.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해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, '적정'으로 의결되어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3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사업명 :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
- 나. 위탁기간 : 2년('25.1.~'26.12.)
- 다. 소요예산 : 980,648천원('24년 기준)
- 라. 수탁자 선정방식 : 공개모집
- 마. 위탁사무 내용

- (입주기업 관리) 모집·선정 및 평가, 공간 관리, 사용료 징수 등
- (경영안정화 지원) 진단컨설팅, 기술·법률 등 멘토링, 교육 운영
- (시장 진출 지원) BM고도화, 마케팅 지원, 인재채용 등 기획·운영
- (투자유치 지원) IR Deck 제작, IR 밋업 및 데모데이 개최 등
- (규제개선 지원) 혁신기술을 위한 규제 개선 간담회, 컨설팅 등 운영
- (글로벌 진출 지원) 해외 전시회 참가, 글로벌 진출 컨설팅 등
- (협력사업 추진) 국내·외 핀테크·금융사, VC, 유관기관 협업 추진
- (성과조사) 입주 및 졸업기업 성과조사, 우수 사례 발굴 등
- (시설관리)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에 대한 의무이행 등

#### 바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

##### ○ 추진근거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
-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

##### ○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‘핀테크’라는 특화된 산업분야에 대한 육성과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맞춘 인큐베이팅 시설 운영을 위해 고도의 전문지식, 경험 등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, 민간의 전문적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 운영이 필요함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**〈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〉**

**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**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 ..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**제6조(민간위탁 사무내용)**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...
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

**〈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7조 및 18조〉**

**제17조(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)** ① 시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.

1.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
2.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
3.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

**제18조(관리·운영의 위탁)**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나. 예산조치 : 2025년 민간위탁금 편성(예정)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※ 작성자 : 경제실 금융투자과 이루다 (☎ 2133-5249 )